

1. 개정이유

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취소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 또한 보양온천의 지정기준(별표1) 중 온천수 기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양온천 지정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보양온천의 지정 취소 유예기간의 한시적 연장(제4조)

- 1) 보양온천 사업시행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(2년간)으로 연장함

나. 보양온천 지정기준(온천수, 권장사항) 명확화(별표1)

- 1) 온천수 기준을 구성하는 ‘온도’와 ‘성분’ 기준에 대해 ‘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’을 ‘온도 기준을 충족하거나, 성분기준 중 각 소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’로 변경
- 2) 보양온천 주변 환경기준 권장사항 ‘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으로 4분류 하여 100% 중 60%’를 ‘권장사항 8개 항목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 하고, 5개 이상 항목이 적합할 경우’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“다만,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0월 0일까지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3년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”로 단서 신설한다.

별표 1 보양온천의 지정 기준 표 중 온천수 비고란 “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”을 “온도 기준을 충족하거나, 성분 기준 중 각 소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”로 주변환경 비고란 “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% 중 60% 이상”을 “권장사항 8개 항목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하고, 5개 이상의 항목이 적합할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제4조(보양온천 지정의 취소) ①

시·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<단서 신설>

② .~ ③ . (생략)

보양온천 지정기준

(제2조제2항 관련)

대항목	중항목	소항목	지정기준	지조전	비고
온천수	온도	온도	용출온도 35℃ 이상		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
	성분	총고용물	용출온도 25℃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/ℓ 이상		
		유황	용출온도 25℃ 이상 총유황 (H ₂ S, S ₂ O ₃ , HS ⁻) 함량 1mg 이상		
		유리탄산	용출온도 25℃ 이상 유리탄산 250mg/ℓ 이상		

제4조(보양온천 지정의 취소) ①

다만,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0월 0일까지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.~ ③ . (현행과 같음)

보양온천 지정기준

(제2조제2항 관련)

대항목	중항목	소항목	지정기준	지조전	비고
온천수	온도	온도	용출온도 35℃ 이상		온도 기준을 충족하거나, 성분 기준 중 각 소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
	성분	총고용물	용출온도 25℃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/ℓ 이상		
		유황	용출온도 25℃ 이상 총유황 (H ₂ S, S ₂ O ₃ , HS ⁻) 함량 1mg 이상		
		유리탄산	용출온도 25℃ 이상 유리탄산 250mg/ℓ 이상		

		중	간 생 략		
보양온천환경	주변환경	권장사항	1. 경관이 수려 2. 녹지(공원) 등이 잘 정비 3. 주변 위생 처리 상태양호 4. 양호한 환경보 호 상태 5. 상수도 시설 상태 6.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. 재해에 대한 안전도 8.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	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 으로 4분류 하여 100% 중 60% 이상	
보양온천환경	주변환경	권장사항	1. 경관이 수려 2. 녹지(공원) 등이 잘 정비 3. 주변 위생 처리 상태양호 4. 양호한 환경보 호 상태 5. 상수도 시설 상태 6.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. 재해에 대한 안전도 8.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		<u>권장사항 8개 항목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하고, 5개 이상의 항목이 적합할 경우</u>